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및 「시행규칙」 개정 안내

1.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-140(2016.1.13.)호와 관련입니다.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시행규칙」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,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개정사항

<시행령>

-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 도입
- 2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·중기업 참여 배제
-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
-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
- 대가지급기간 단축(7일 이내 → 5일 이내)
- 공간정보사업을 협상계약 체결가능 사업으로 추가
- 용역의 지명입찰금액 상향(1억 원 이하 → 2억 원 이하)

<시행규칙>

- 용역의 일반관리비율 세분화(5% → 5~10%)
- 폐기물 용역 등이 지명입찰 가능토록 규정 구체화
- 2단계 동시입찰 기준 명확화

나. 시행일 : 2016.1.15. (금)

- 붙임 1.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·공포안 1부.
2.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1부.
3.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·공포안 1부.

4.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서관과01-151, 서사01-39, 서울특별시의회의회장(의정담당관), 서구1-25, 서울시투자출연기관

주무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1/13 서명관

협조자

시행 재무과-1978 (2016.01.13.) 접수 재무과-392 (2016.01.15.)
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/ www.seoul.go.kr

전화 2133-3224 /전송 2133-1030 / 2012103146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)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12. <u>용역: 100분의 5</u> ✓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7조(지명입찰의 지명기준)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· 제6호 · 제8호 · 제9호에</p>	<p>제8조(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폐기물 처리 · 재활용 용역: 100분의 10</u></p> <p>13. <u>시설물 관리 · 경비 및 청소 용역: 100분의 9</u></p> <p>14. <u>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: 100분의 8</u></p> <p>15. <u>여행, 숙박, 운송 및 보험 용역: 100분의 5</u></p> <p>16. <u>장비 유지 · 보수 용역: 100분의 10</u></p> <p>17. <u>기타 용역: 100분의 6</u> (6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지명입찰의 지명기준) -- ----- ----- -----</p>